



2021. 11. 08.(월)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
-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6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11
-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15

제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22.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1. 10. 26.
- 상 정 일 : 2021. 11. 02.(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가. 개정이유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의 위치·기능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약용작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사업 추진 지원
 - 약용작물 원료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 생산 지원
 -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위탁기간, 자격,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 휴·폐업 사전신고, 손해배상 책임, 사용료, 이용료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조례안은 왕암동 바이오밸리 1로 68에 위치한 약용작물산업화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와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끝.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08호 관련
----------	-------------

발의일자 : 2021. 11. 02.

발 의 자 : 산업건설위원회 6명

1. 수정이유

-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조례안」의 용어 일부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 조례에 따라**”를 “**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하여**”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시설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고의 내지**”를 “**고의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u>이 조례에 따라</u> 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u>건축물과 부대시설</u> 을 말한다.	1. ----- ----- <u>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하여</u> ----- <u>시설물</u>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u>고의 내지</u>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	4. ----- <u>고의나</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22.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1. 10. 26.
- 상 정 일 : 2021. 11. 02.(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및 제12조(권한의 위임)
 -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 필요성
 - 민간위탁을 통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유실 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 시스템 구축과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유지 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사용 내용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 보호동물의 관리 및 반환·분양·인도적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입양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관리
-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 동물보호 및 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 기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위탁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위탁 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 ○규 모 : 건물면적 150㎡(1개동, 지상1층), 부지면적 4,513㎡ ○위탁시설 : 건물면적 150㎡(1개동, 지상 1층) 부지면적 4,513㎡, 장비 및 물품(붙임2) ○최초위탁일 : 2020. 01. 01. ~ 2021. 12. 31.(2년) ○직원현황 : 5명(대표 1, 포획 3, 사무 1) ○보호가능두수 : 44두(대형견 8, 중·소형견 36) ○주 용 도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3년)

○ 위탁 예산

구 분	내 용	금액(천원)/연간	산출내역
사 무 비	인건비	192,000	○ 대표 등 직원 5명 급여, 보험 등
관 리 비	보호관리비	90,000	○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일반운영비	30,000	○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합 계		3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금 : 312,000천원 ○ 시설비 : 20,000천원 ○ 총 332,000천원(2022년 예산제출안)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시 성과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11월중)
- (※ 평가결과 70점 미만 및 심의 부적격 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보호, 반환, 분양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동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22.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1. 10. 26.
- 상 정 일 : 2021. 11. 02.(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가.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함.

나.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안 제6조 ~ 제7조)
-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안 제8조)
-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 계 법 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주 요 질 의 및 답 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보 류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22.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1. 10. 26.
- 상 정 일 : 2021. 11. 02.(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등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
- 필요성
 - 도심 내 하천(용두천)과 농경지, 축사 등의 수질 오염원을 국내 유일 특허 「생태적수질정화 비오톱」 공정을 통한 자연 정화 시설의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관의 체계적 관리 필요

나. 주요내용

- 위탁 사용 내용
 - 생태공학적 유지관리

- 치수·이수적 안정성 확보, 수질정화 효과, 생태복원, 친수 공간 조성, 경관향상
- 조사·분석·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정화효과 극대화
- 자연적 교란, 인위적 교란에 대해 습지생태의 안정적 정착
- 환경공학적 유지관리
 - 침전물 등에 의한 수질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 관리
 - 수량 및 수위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 생태하천, 부설 건축물 등 사업지 시설 일체

○ 위탁 시설의 개요

- 위탁대상 : 금성면·영천동 생태자연습지 (2개소 통합관리)
- 시설현황

구 분	영천동 생태자연습지	금성면 생태자연습지	비고
조성기간	2013. ~ 2018.	2016. ~ 2020.	
위 치	영천동 1908번지(37,795㎡)	금성면 적덕리 42번지(25,703㎡)	
사 업 비	16,500백만원	8,000백만원	
사업내용	인공습지(16,000㎡) / 저류조(2,000㎡)	인공습지(11,000㎡)	

○ 위탁기간 : 2022. 3월 ~ 2025. 2월 (3년)

○ 위탁예산

- 총위탁비 : 연 200백만원(기금 14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단가	수량	단위	금액	비고
1. 시설관리					
1) 생태습지관리					
시설관리	4,000	12*2	월	96,000	

	침전물 정화	2,000	12	회	24,000	
	식생식물 관리	5,000	4	회	20,000	
	2) 조경 및 제초	3,000	5	회	15,000	
2.	수질분석(모니터링)	200	15*2	회	6,000	
3.	기타 제경비				5,000	
	순용역원가				166,000	
	일반관리비 및 이윤		10%		16,600	
	총용역원가				182,600	
	부가가치세		10%		18,260	
	총 산 출 비				200,000	절사

※ 항목별 예산(안)은 관리·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신청자격 : 제천시 소재 업체

※ 본 대상지는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대상지로서 신청업체는 특허(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신기술)자 또는 통상(전용)실시권자 중 1인 이상과 사용계약 체결 조건

- 선정방법 : 공개경쟁모집 (선정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위탁 동의안은 관내 영천동 및 금성면 일원 생태자연습지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의 특허 공법인 생태적수질정화 바이오탑 공정을 도입하여, 지방하천의 자연적 수질개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허 기술 보유 전문기관에 생태자연습지 2개소를 통합관리토록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등」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월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끝.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22.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21. 10. 26.
- 상 정 일 : 2021. 11. 02.(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제천시는 2016년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후 2019년 정책 변화에 따라 1차 변경을 완료. 그러나 도시재생 정책이 실효성을 기반으로 지속 변화하고 있어 정책변화 대응에 맞는 변경 수립 불가피
- 충북지역 내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적 공간관리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선제적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으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비전제시와 추진체계 수립 필요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 공간범위 :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
 - 제천시 행정구역(17개 읍면동) 내 도시지역
 - 도시지역 : 56,209km²(동지역 49.619km², 봉양 5,109km², 수산 1,481km²)
- 시간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2031년(10년)
- 면 적 : 883.468km²
- 주요내용 : 여건 및 잠재력 분석, 활성화지역 변경, 신규지정, 운영 관리 방안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정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통합적 공간 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5. 주요 질의 및 답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 없 음 ”

7. 토 론 요 지 “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찬 성 의 견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안. 끝.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 건 안

[의견청취사유]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15조에 의해 의회 의견 청취

[의 건 안]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6년 최초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2019년 1차 변경을 시행한 바 있으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17년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으로 5개 권역의 뉴딜사업과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역세권, 서부동), 1개소의 인정사업(어번케어 센터), 2개소의 새뜰마을(남현동, 화산동)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2개권역-원도심,영천동)되거나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음.
-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은 2019년도에 변경 수립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 공모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5개 권역의 활성화 지역을 전략 계획에서 제외하고,
- 현재의 쇠퇴지표와 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권역, 다른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도시 인프라의 변화, 연계 사업들의 추진 현황, 차년도 도시재생 공모 참여 등을 위하여 2021년 연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수립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주거 및 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 추진된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021. 11.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